

---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심사기준 및 허가 신청요령

---

2021. 3.



방송통신위원회

# 목 차

I.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허가 기본계획 .....	3
II. 공동체라디오방송 허가계획 .....	5
III. 공동체라디오방송 허가 심사 .....	7
1. 심사개요 .....	7
2. 심사절차 개괄 .....	8
3. 심사기준 및 배점 .....	9
4.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12
5. 허가여부 결정 .....	12
IV. 허가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 .....	13
1. 신청서류 및 제출 부수 .....	13
2. 작성 및 제출요령 .....	13
<b>[붙임] 신청서류 작성양식 .....</b>	<b>15</b>

# I.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허가 기본계획

## 1. 정책 목표

- 공동체라디오 방송 사업자 규모를 확대하고, 인지도 제고 및 저변 확대를 통해 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 및 안정적인 운영기반 마련
- 지역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지역매체 활성화로 청취자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공성·다양성을 제고
- 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 공론의 장을 활성화하고, 취약계층 사회통합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운영주체 선정

## 2. 기본 방향

- 허가 사업자 수를 특정하지 않고, 가용주파수 확보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적 필요성 등을 고려한 심사를 통해 적격사업자에 허가권 부여
  - 방송의 공공성 및 다양성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청취자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
- 공익을 목적으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의 특성을 고려해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방송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
  - 방송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사업자 자체조달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및 방송 운용 계획 등을 심사

## 3. 사업 주체

- 비영리 법인(설립예정 법인포함)

- 정부, 지자체, 종교단체, 정당, 영리목적 사업자 제외(방송법 제8조제14항)
- 공동체라디오방송국 1개 초과 소유 금지(방송법 제8조제15항)

#### 4. 허가 출력

- o 가청범위, 혼간섭 등 전파환경을 고려한 기술심사를 바탕으로 법정 출력(10W)내에서 허가
  - ※ 현재 공동체라디오방송 7개사 출력은 전파환경에 따라 3W~10W로 허가

#### 5. 재원

- o 방송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사업자 자체조달(자율경영)을 원칙으로 함
  - 기부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방송광고수익금, 협찬고지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방송법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
    - ※ 현행법상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광고와 협찬고지는 지상파라디오 채널과 동일한 수준에서 허용됨(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 6. 방송 편성 등

- o 매일 6시간 이상 방송을 실시하고,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60% 이상을 허가받은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편성(방송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 음악, 문화, 정보제공(지역관련 소식에 한정)
  - 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2항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금지
- o 청취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회를 연 1회 이상 실시(방송법 제86조제1항)
- o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20% 이상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편성(방송법 시행령 제52조의2)
- o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은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30% 미만 편성 가능(방송법 시행령 제52조의2)

## II. 공동체라디오방송 허가계획

### 1. 허가대상 방송사업

- 방송법 제9조제11항에 의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 2. 허가 방송권역 및 유효기간

- 시, 군, 구 행정구역 단위 허가를 원칙으로 하되, 주파수 환경과 지역·문화·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할 수 있음
  - ※ 실제 방송가청 권역은 허가 주파수와 출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허가 유효기간은 5년 범위 내에서 허가

### 3. 허가신청 자격

- 비영리 법인(설립예정 법인포함)
  - ※ 정부, 지자체, 종교단체, 정당, 영리목적 사업자 제외(방송법 제8조제14항)
  - 공동체라디오방송국 1개 초과 소유 금지(방송법 제8조제15항)

### 4. 허가신청서 접수

- 접수기한 : 2021.4.30.(금)까지
- 접수서류 : 방송국허가신청서, 첨부서류 등
- 접수처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문의 : 지상파방송정책과(☎02-2110-1423, 1426, [tvradio2@korea.kr](mailto:tvradio2@korea.kr))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공동체라디오방송 신청 문의 게시판

### 5. 추진일정

일 정	주요내용	비고
'21.3월	○ 허가신청 공고 및 신청요령 설명회 개최	
'21.4~5월	○ 허가 신청서 접수(2021.4.30.(금)까지) ○ 신청서류 검토 및 신청서류 보정 ○ 방송국 기술심사, 시청자 의견 수렴 등	
'21.6월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의견청취 등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6. 유의사항

- 허가와 관련된 각종 신청(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과의 공적인 약속으로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므로 사실에 기초하여 성실히 작성하여야 함
- 고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타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과 그 책임은 해당 신청자에게 귀속됨
-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에 보충자료 등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백서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
- 기술심사를 통해 해당 지역에 가용주파수가 확인된 법인에 한해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심사함
  - ※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지 않는 신청서는 접수 반려

## 7. 기타 사항

- 허가신청 관련 설명회 개최(온라인)
  - 일 시 : 2021.3.18.(목), 14:00~16:00
  - 접속방법 : 사전신청자에 한해 회의 접속 링크 송부
  - 참석대상 : 공동체라디오 허가신청 관계자(책임자 및 담당자)
  - 주요내용
    -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허가 계획 및 심사기준 설명
    - 허가신청 절차, 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 설명
    - 기타 질의응답 등

### Ⅲ. 공동체라디오방송 허가 심사

#### 1. 심사개요

##### 가. 기본방향

- 소규모 비영리 방송인 공동체라디오방송에 특화된 사업계획과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계획, 지역적 필요성 등을 중점 심사
- 지역밀착형 방송매체로서 자생력 있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방송사 운영계획 등을 평가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 나. 심사원칙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의지 평가를 통해 정책목표의 실현이 가능한 사업자 선정
- 심사기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 심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 심사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 다. 심사방침

- 사업자 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사전공개
- 청취자 의견 청취
  - 청취자 의견접수 공고문 관보 및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별도의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2. 심사절차 개괄

### 가. 신청서류 접수

- 제출서류 구비 여부 확인 및 미비서류 보완

### 나. 시청자 의견 청취

-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통해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

### 다. 신청서류 보정

- 제출서류 세부 검토 후 보완서류 징구 및 보정사항 통보

### 라. 기술심사 및 현장실사

- 가용주파수 확인을 위한 기술 심사
-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실사

### 마.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회 위원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바. 의견청취(필요시)

- 청취내용 : 신청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 등 심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참석대상 : 신청법인 대표자 등
- 청취일시 :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기간 내
- 청취결과 : 의견청취에 대한 별도 배점 없이 관련 심사평가에 반영

### 사.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

### 아.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 심사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허가 여부 결정(필요 시 허가 조건 부가)

### 자. 심사결과 통보 및 공표

- 허가 또는 허가 거부



### 3. 심사기준 및 배점

#### 가. 심사기준

- 방송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지역기반의 공동체 라디오방송 허가심사임을 감안하여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신규 방송국의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

####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가. 배점

- 심사항목의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하며, 세부 심사기준 및 평가 지침은 심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

#### < 심사항목별 배점(안) >

심사항목	배 점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150(비계량)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250(비계량)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250(비계량)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150(비계량)
5. 재정·기술적 능력 및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200(비계량)
계	1,000

#### 다. 평가방식

- 허가신청서 및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항목에 대하여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전원이 평가

- 평가항목별로 수, 우, 미, 양, 가로 등급을 부여한 후 각 등급 구간 내에서 적절한 점수로 환산하여 평점을 부여

**< 비계량 평가 환산점수 기준 >**

구분	등 급	내 용	평점 환산비율(%)
1	수	매우 우수	해당 배점의 80% 이상 100% 이하
2	우	우 수	해당 배점의 60% 이상 80% 미만
3	미	보 통	해당 배점의 40% 이상 60% 미만
4	양	미 흡	해당 배점의 20% 이상 40% 미만
5	가	매우 미흡	해당 배점의 0% 이상 20% 미만

※ 심사항목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최고·최저 점수를 준 심사위원이 2인 이상일 때는 각각 1인의 심사점수만 제외

**라. 심사평가 항목 세부내용**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 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계획)** 방송사업 목표·비전의 적정성, 대표자 등의 공적책임 실현 의지, 공익적 프로그램(어린이·노인·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재난방송 등) 편성계획 등을 평가
- ② **(청취자 권익 실현 방안)** 방송법상 시청자 권익 보호 관련 규정 이행 계획 등 시청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평가
- ③ **(신청법인의 건전성·적정성)** 신청법인의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의지 등을 고려하여 정책 목표 부합여부, 건전성 등 평가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①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의 적정성)**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기본 방향의 적정성, 방송 목적과 프로그램 편성과의 부합성 등을 평가
- ② **(방송 프로그램 제작수급계획의 적정성)** 방송프로그램 편성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제작·수급계획의 적정성·타당성, 지역 밀착 프로그램 제작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①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 해당 지역 공동체라디오방송국 신설 필요성 및 당위성, 사회·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평가
- ② **(지역성 구현 및 지역사회 기여 계획의 적절성)** 소출력 커뮤니티 매체로서 콘텐츠의 지역성 구현 및 지역사회 기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

□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① (인력 및 조직운영 계획의 적정성) 분야별·연도별 소요인력 산출 및 운용 계획의 적정성, 자원봉사 인력 확보 방안, 교육 훈련 계획 등을 평가
- ② (경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대표자의 전문성,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경영 감시시스템 등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평가

□ 재정·기술적 능력 및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① (자금 조달 및 운영 계획) 자금 조달계획과 시설투자, 경상운영비 등 자금 운영계획 평가
- ② (신청법인의 재무적 안정성) 신청법인의 재무 관련 지표 등을 활용하여 안정적 방송운영 가능성 등 재정적 능력 평가
- ③ (방송시설 구축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방송 제작·송출 시설 설치·운영 계획 및 시설 투자금액의 적정성, 방송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
- ④ (난청 및 혼신 해소 계획) 방송구역 내외 난청 및 혼신 해소 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
- ⑤ (방송발전 기여 방안) 지역공동체 발전에 특화된 방송발전 기여 의지, 재난방송 실시계획 적정성, 방송발전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등 평가

□ 세부심사항목별 배점

심사평가 항목	배 점	세부심사항목(안)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150점	1-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계획(50) 1-2. 청취자 권익 실현 방안(50) 1-3. 신청법인의 건전성·적정성(50)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250점	2-1.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계획의 적정성(150) 2-2.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수급계획의 적정성(100)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250점	3-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150) 3-2. 지역성 구현 및 지역사회 기여 계획의 적절성(100)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150점	4-1. 인력 및 조직운영 계획의 적정성(100) 4-2. 경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50)
5. 재정·기술적 능력 및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200점	5-1.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50) 5-2. 신청법인의 재무적 안정성(50) 5-3. 방송시설 구축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50) 5-4. 난청 및 혼신 해소 계획(20) 5-5. 방송발전 기여 방안(30)
계	1,000점	

#### 4.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위원회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 8인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심사위원장을 결정
  - 심사위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심사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 심사위원회 구성(안) >

구 분	분 야(인원)	비 고
심사위원 (8)	심사위원장(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방송·미디어 분야(2)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경제·경영·회계분야(1)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법 률 분 야(1)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기 술 분 야(1)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분야(1)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방통위 사무처(1)	담당 과장

※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음

#### ○ 심사위원회 직무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심사항목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과 지침 결정
-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 심사 평가
- 필요시 신청법인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 의견제시 등

#### 5. 허가 여부 결정

-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한 법인을 대상으로 허가여부 의결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또는 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가
- 신규허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 단축 가능

※ 전파법 시행령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제1항, 제4항

## IV. 허가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요령

### 1. 신청서류 및 제출 부수

#### 가. 신청서류

- ① 방송국허가신청서
  -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방송국 개설허가)
  -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방송국)
  - 시설설치계획서
- ② 서약서
- ③ 사업계획서
- ④ 첨부서류(주간기본편성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⑤ 요약문(20쪽 내외, 별도 제본 제출)

#### 나. 제출 부수 : 제본서류 15부(원본 1부, 사본 14부, 원본파일은 별도송부)

구분	원본	사본	USB	비고
최초 접수시	1	2	1	신청서 파일을 저장한 USB 1개 제출
보정 후 재접수시	(원본 보정)	12	1	보정된 파일을 저장한 USB 1개 제출
계	1	14	2	총 서류 15부 및 USB 2개 제출

※ 제출서류 제본 방법 : 좌철, 요약문도 본문과 제출시기 및 부수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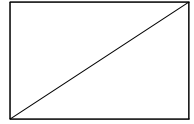
### 2. 작성 및 제출요령

-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기술하되, 심사항목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체계와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함
- 허가 신청서류는 신청법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함. 다만, 기술·회계 등 특정부문의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문기관 등을 밝혀야 함

- 제출서류는 한글문서(Hwp)로 작성하고, A4용지(210×297mm)를 사용하며, 반드시 쪽수를 일련번호로 작성하여 표기하여야 함
  - 글자모양 : 글꼴 휴면명조, 글자크기 14포인트
  - 편집용지 여백 : 상·하 15mm, 좌·우 20mm, 머리말·꼬리말 10mm
- 지도·도면 등 불가피하게 A4 규격보다 큰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하도록 함
- 제출하는 원본 및 사본은 표지에 각각 '원본', '사본'임을 표시하고, 표지 안쪽 면에는 각각 '원본임이 틀림없음' 또는 '원본과 같음'을 기재하고, 원본과 사본 모두 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함
  - 사본의 경우 겉표지 오른쪽 상단에 ☑ 표시를 하고 아래쪽에는 전체 사본 부수(12), 위쪽에는 사본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요약문은 별도로 20쪽 내외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요약문의 근거가 되는 본문 및 부속서류의 해당항목을 적시하여야 함
- 붙임 허가신청서 양식은 표준양식이며, 각 신청법인 특성에 맞게 편집·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신청서류의 모든 날인은 법인 인감을 사용하여야 함

### 3. 작성 세부 지침 : 붙임 신청 양식 내 세부 지침 참조 바람

- 양식에 제시된 필수기재 항목은 모두 작성하되, 신청서 기본 양식 틀 내에서 추가항목 기재 가능, 단 전체 150페이지 내로 작성하여야 함
-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시설설치계획서 등 기술관련 서류는 별도 게재된 작성요령 참조



# 공동체라디오방송 허가신청서

원 본

2021. . .

법 인 명





원본임이 틀림없음

법 인 명 :

대표자명 : (인)



# 목 차

I. 방송국허가신청서 .....	0
1. 방송국허가신청서 .....	0
2.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방송국 개설허가) .....	0
3.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방송국) .....	0
4. 시설설치계획서 .....	0
II. 서약서 .....	0
III. 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계획서 .....	0
제1장 신청인에 관한 사항 .....	0
제2장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계획 .....	0
제3장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 .....	0
제4장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 및 타당성 .....	0
제5장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 .....	0
제6장 재정·기술적 능력 및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0
IV. 대표자·편성책임자의 이력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0
V. 법인의 정관·법인등기부등본 .....	0
VI. 기타서류 .....	0



# I . 방송국허가신청서





## 2

#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1면)

<b>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b>			
(지상파방송국 또는 지상파방송보조국 개설허가)			
① 목 적			
② 개설을 필요로 하는 이유			
③ 방송사항			
④ 방송구역에 관한 사항	(1) 방송구역		
	(2) 방송구역내의 가구수		
	(3) 방송구역내의 수신예상가구수		
⑤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1) 송신소 소재지		
	(2) 송신안테나의 위치	동경    도    분    초 북위    도    분    초	
	(3) 연주소 소재지		
⑥ 희망하는 전파 형식, 주파수 및 안테나공급전력	(1) 전파의 형식		
	(2) 주파수(kHz, MHz)		
	(3) 안테나공급전력(W, kW)		
⑦ 운용시간	시부터	시까지(    시간)	
⑧ 정보통신공사사업자에 관한사항 및 준공 예정일	(1) 성명(상호 또는 대표자명)		(2) 생년월일
	(3) 소재지		
	(4) 등록번호		(5) 준공예정일
⑨ 무선설비 등의 공사비 (계: 원)	송신소	(1) 토지 및 건물                      원 (3) 안테나와 접지장치                원 (5) 기타                                    원	(2) 송신장치                              원 (4) 전원장치                              원
	연주소	(6) 토지 및 건물                      원 (8) 기타                                    원	(7) 연주소 설비                            원
⑩ 공사비지출방법	(1) 자본금 또는 출자금                원	(2) 사채                                      원	
	(3) 차입금                                    원	(4) 기타                                      원	

210mm×297mm[백상지(80g/㎡)]



⑪ 운영 계획	(1)경영형태							
	(2)자본금액							
	○ 주된 출자자 및 출자액							
	(3)성명	(4)대표자	(5)생년월일	(6)소유 주식수	(7)출자금액	(8)지분율	(9)종별	(10)비고
	○ 경영에 대한 지배권자(임원)							
	(11)성명	(12)생년월일	(13)직위	(14)담당	(15)겸직	(16)이해관계	(17)비고	
	○ 다수의결권자(의결권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18)성명	(19)생년월일	(20)주소	(21)의결권수	(22)의결권의 총수에 대한 비율		(23)비고	
	○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기준							
	(24)방송사항				(25)1주간당 시간 비율			
	○ 대표적인 1주간의 방송프로그램·주간기본편성표 붙임							
	○ 타국으로부터 공급받는 방송시간							
	(26)공급국명		(27)1주간의 시간		(28)협정내용		(29)비고	
○ 방송의 주사업 또는 부대사업의 구별								
○ 사업수지예건(내역은 별첨)								
(30)수입				원 (31)지출				원
(32)이익금				원				

기 재 요 령

1. 제①란 : 중파방송업무, 단파방송업무, 초단파방송업무, 텔레비전방송업무, 팩시밀리방송업무 또는 국제방송 업무 등으로 기재합니다.
2. 제④란 (1)
  - 시·군·구 등의 행정구역 명칭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이에 의하여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이하의 행정구역 명칭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단파방송업무를 행하는 방송국의 경우에는 수신대상지역을 표시합니다.
  - 20만분의 1 이상 정밀지도에 잡음구역에 따른 전계강도곡선으로 방송구역을 표시합니다.
  - 중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블랭킷 에어리어(blanket area)에 대하여는 발사안테나의 위치를 표시하는 5만분의 1 이상 정밀지도에 표시합니다.
  - 텔레비전방송 및 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에 대하여는 「전파법시행령」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면도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제④란 (2)~(3) : 위 (1)의 방송구역별로 기재합니다(세부내용은 별첨할 수 있습니다)
4. 제⑤란 (2) : 송신안테나의 위치를 세계측지계(WGS84좌표계) 좌표로 기재합니다. 5만분의 1 이상 정밀지도에 표시합니다.
5. 제⑨란·제⑩란·제⑪란·제⑫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운영하는 방송국 및 연주를 갖추지 아니한 방송국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제⑪란 (1) : 개인경영·회사·공익법인·공공단체 등으로 구별하여 기재합니다.
7. 제⑪란 (2) :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총수·종류·액면·발행액수 등을 기재하고,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기부금 등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8. 제⑪란 (3)~(10)
  - (3) 성명란에 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되 총자본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를 기재합니다.
  - (4) 대표자란에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 (5)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개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6) 소유주식수를 대표자 및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기재합니다.
  - (7) 출자금액은 소유주식수에 그 주식의 액면금액을 곱한 값을 기재합니다.
  - (9) 종별란에는 주식의 종류·회원·조합 등의 출자금·기부금 등으로 구별하여 기재합니다.
  - (10) 출자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비교란에 이를 기재합니다.
9. 제⑪란 (11)~(17)
  - 겸직란에는 다른 사업의 임원을 겸한 경우 그 법인명 및 직위를 기재하고, 대표권을 가진 임원에 관하여는 비교란에 표시합니다.
  - 이해관계란에는 본 방송국과 겸직한 사업간에 있어서의 출자·광고제공·뉴스제공·물건제공·대리점역할등을 기재합니다.
  - 비교란에는 외국인인 경우에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10. 제⑪란 (18)~(23)
  - 성명란에는 의결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명을 기재하고, 주소란에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설립중의 법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발기인 전원을 기재합니다.
11. 제⑪란 (30)~(32) : 제1차연도, 제2차연도, 제3차연도별로 기재합니다.

### 3

##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1면)

<b>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b>							
(지상파방송국 또는 지상파방송보조국)							
① 송신부	(1)송신방식						
	(2)장치구분						
	(3)정격출력		(4)실효복사전력				
	희망 또는 발사 가능한 전파특성		(5)전파형식	(6)주파수	(7)주파수범위		
			(8)발진방식	(9)변조방식	(10)최고변조 주파수		
	(11)주파수변환 방식						
	(12)주파수편이억제장치						
	(13)안테나공급전력저하장치						
	중단부트랜지스터 (IC 또는 진공관)		(14)명칭	(15)개수	(16)비고		
	스푸리어스발사 제거장치		(17)방식	(18)제거대상 주파수	(19)삽입손실		
송신장치제원		(20)제조사명	(21)형식 또는 명칭	(22)일련번호 및 제조연월일			
② 수신부 (주·예비 장치)	(1)전파형식 및 주파수범위		(2)국부발진주파수와 중간주파수		(3)중간주파증폭부통과대역폭 (-6dB점)		
	(4)수신채널 및 수신사이트명		(5)제조사명	(6)형식 또는 명칭	(7)일련번호 및 제조연월일		
③ 송신안테나계등	안테나	(1)형식 및 구성	(2)편파면	(3)이득(dB)	(4)지상고 (m)	(5)해발고 (m)	(6)주복사각도 또는 패널방향
	(7)전기적틸트					(8)방향별틸트	
	급전선	(9)종별	(10)길이(m)	(11)손실(dB)	(12)기타	(13)비고	
(14)전체손실(dB)							

210mm×297mm[백상지(80g/㎡)]

④ 수신 안테 나계	안테나	(1)형식과구성	(2)편파면	(3)이득 (dB)	(4)지상고 (m)	(5)해발고 (m)	(6)지향각
	급전선	(7)종별		(8)길이(m)	(9)손실(dB)		(10)기타
⑤ 연주 장치	(1)종류		(2)상용(대수)	(3)예비(대수)	(4)형식 또는 명칭	(5)비고	
⑥ 조정 장치	(1)종류		(2)상용(대수)	(3)예비(대수)	(4)형식 또는 명칭	(5)비고	
⑦ 전원 설비	구분		(1)종류	(2)용량	(3)전압	(4)상수	(5)비고
	연주소	주					
		예비					
	송신소	주					
예비							
⑧ 접지 방식	(1)송신기			(2)접지저항			
	(3)안테나			(4)접지저항			
	(5)기타						
⑨ 안테 나설 치대 및 급전 선주	구분		(1)종류	(2)높이	(3)기부 지상고	(4)공용하는 방송국	(5)주수
	안테나설치대						
	급전선주						
⑩ 부속 설비	의사안테나		(1)종류		(2)용량		(3)개수
	자동경보장치 또는 자동감시장치	(4)경보를 받거나 감시하는 장소					
		(5)경보 또는 감시항목					
	자동제어장치(원 격제어장치포함)	(6)제어장소					
(7)제어항목							
⑪기타							
⑫첨부도면 및 자료 (1) 연주소 및 송신소 위치표시도                      (2) 부지내 시설 및 기기배치도 (3) 방송프로그램 중계망도                              (4) 송신기 계통도 및 회로도 (5) 안테나계 구성약도                                      (6) 송신안테나 지향특성도 (7) 자동제어장치 및 자동감시장치 계통도 (8)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작성요령 및 표시방법」에 따른 방송구역 산출근거							

기 재 요 령

1. 제①란 (1): 중파방송, 초단파방송 송신의 표준방식(모노포닉 또는 스테레오 포닉방송) 또는 TV방송에 관한 송신의 표준방식(TV 음성다중방송) 등으로 기재합니다.
2. 제①란 (2): 송신기가 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주" "예비" "영상" 또는 "음성" 과 같이 기재합니다. 이 경우에 공사설계의 내용이 동일한 장치에 대하여 일괄하여 기재(제조번호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제①란 (3): 중파방송 및 단파방송의 경우에는 반송파전력을, 초단파방송의 경우에는 평균전력을, 디지털TV방송은 평균전력을 기재합니다.
4. 제①란 (4): 초단파방송 및 TV방송의 경우에는 출력, 이득, 손실을 고려한 전력을 기재합니다.
5. 제①란 (11): 방송파 직접 수신중계방식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6. 제①란 (12): 주파수권이 역제장치의 명칭을 기재하되 송신기와 동일장소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장소를 함께 기재합니다.
7. 제①란 (14), (15), (16), (20), (21), (22) 및 제②란 (4), (5), (6) : 허가신청시 제조자명 등이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준공신고시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8. 제②란 (4): 다른 방송국 또는 방송보조국의 전파를 직접 수신하여 중계하는 경우에는 수신채널 및 수신사이트명을 기재합니다.
9. 제③란 (1) 내지 (7): 주장치와 예비장치를 구분 기재합니다.
10. 제③란 (3): 상대이득 또는 절대이득을 기재합니다.(지향성안테나일 때에는 최대지향방향의 이득). 다만, 표준방송의 경우에는 단소수직안테나(Short Vertical Antenna)을 기준으로 한 이득을 기재합니다.  
 ※ 단소수직안테나: 원전도체면상에 설치된 1/4파장보다도 매우 짧고 손실이 없는 접지 안테나
11. 제③란 (4) 및 (5): 안테나 복사체의 중심까지의 높이를 기재. 다만, 표준방송의 경우에는 (4)에 복사체의 높이를 기재합니다.  
 예) 지상고: 지상에서 안테나 중심부까지의 높이 해발고 : 해면에서 안테나 중심까지의 높이
12. 제③란 (6): 지향성안테나의 경우에는 지향성을 주는 방법을 기재합니다.
13. 제④란: 송신안테나계에 준하여 기재합니다.
14. 제⑤란: 레코드플레이어·테이프레코더·비디오레코더·스튜디오카메라·필름카메라·필름투사기 등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15. 제⑥란: 제한증폭기·조정증폭기·전치증폭기·카메라제어장치·동기신호 발생장치·혼합증폭기·안정증폭기·스테레오 제네레이터 등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16. 제⑦란 (5): 전원설비를 다른 방송국과 공용하는 경우 해당 방송국명과 공용 한다는 뜻을 기재합니다.
17. 제⑧란: 라디얼스일 때에는 접지선수·길이 및 깊이를, 심골접지일 때에는 면적·매수 및 깊이와 각각 접지저항을 기재합니다.
18. 제⑨란: 안테나설치대에 준하여 기재합니다.
19. 제⑨란 (2): 건축물(건물)의 높이를 제외한 안테나 전체높이 값을 기재합니다.
20. 제⑨란 (3): 기부지상고는 건축물(건물)이 높이를 포함한 높이를 기재합니다.  
 예) 건물+안테나
21. 제⑩란 (4), (5), (6), (7)란: 경보·감시 또는 제어하는 장소가 경보감시 또는 제어대상 무선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합니다.
22. 제⑩란: 각 호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 )속에 ○표를 합니다.
23. 제⑩란 (1): 5만분의 1지도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24. 제⑩란 (2): 국사·부속사·안테나 등의 개요를 기재하고, 안테나부근의 인접무선국 및 전파장애시설물을 표시합니다.
25. 제⑩란 (3): 중계망의 구성과 방식을 기재합니다.
26. 제⑩란 (4): 각단의 용도, 진공관(반도체)의 명칭주파수 및 전원전압 등을 기재합니다.  
 허가신청시 제조자명 등이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준공신고시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27. 제⑩란 (5)
  - 안테나설치대 안테나공용장치 및 급전선공용장치를 포함하고, 안테나복사체의 형상및 크기와 복수의 복사체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각 복사체에 공급되는 전력비 및 전류의 위상을 함께 기재합니다.
  - 안테나의 취부상황을 평면도(방위표시) 및 측면도로 작성합니다.
28. 제⑩란 (6): 수평면 및 수직면의 지향특성도를 각각 작성하고 1도 단위로 안테나 방사전력의 수직, 수평값을 제출합니다.

## I. 방송사옥에 관한 사항

- 1 방송국 설립 계획
- 2 방송청사 주요시설

## II. 방송장비 등 시설구축 및 투자에 관한 사항

### 1. 방송장비 등 시설 구축

- 가. 연주소
- 나. 송신소

### 2 시설투자계획

- 가. 장비의 도입 및 설치
- 나. 방송신호의 규격
- 다. 주요 방송장비
- 라. 방송장비의 유지보수
- 마. 방송장비의 예산 확보
- 바. 방송사고 대책

## III. 사업구역도 및 시설배치계획도

- 1 가청구역
- 2 사업구역도
- 3 방송구역내 수신 예상 가구수

## Ⅱ. 서약서









## Ⅲ. 사업계획서



# 1

## 신청인에 관한 사항

---

### 1. 개 요

※ 설립목적, 운영방향 등을 기술

### 2. 방송사업의 기본이념 및 목표

※ 방송사업 운영 기반이 되는 가치 및 방송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3. 연 혁

※ 최초 법인 설립일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연혁을 기술

#### 4. 법인 일반현황

구분		세부 내역		
법인 명칭		국문		(약칭)
		영문		(약칭)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법인설립일자			자산(단위:천원)	
구분	직위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약력
법인대표자				
편성책임자				
임원				
구성원 (명)		정규직		
		계약직		
		자원봉사자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계획**

※ 공동체라디오방송의 특성을 고려해 어떻게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할 것인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가. 방송사업 목표·비전****나. 대표자, 지원단체 및 구성원들의 공적책임 실현 의지****다.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계획**

※ 어린이·노인·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재난방송 등을 포함하여 공익성이 명확한 프로그램에 한해 작성

## 2. 청취자 권익 실현 방안

※ 방송법상 시청자 권익 보호 관련 규정(「방송법」 제35조, 시청자 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 이행 계획 등 청취자 보호 및 권익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아래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가. 시청자(청취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나. 시청자(청취자) 불만처리계획

다. 시청자(청취자) 권익보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 계획

라. 방송평가회 운영 계획(「방송법」 제86조)



3. 신청법인의 건전성·적정성

※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정책 목표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적격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현황·활동 실적 또는 계획과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 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외부감사 지적사항 불이행 및 법령 위반사례

※ 설립된 법인에 한정하여 기술

가. 최근 5년간('16~'20) 외부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순번	외부감사 지적사항	이행(자구)계획 제출내용	이행 결과	미이행시 사유	비고

나. 법령 위반사례

※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법령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과징금·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모두 기술

순번	법령 위반건명	위반내용	조치결과	미조치시 사유	비고

## 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

※ 공동체라디오 방송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편성할 것인지 운영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가. 기획·편성 기본 방향

## 나. 분야별 주요 프로그램

구 분	프로그램명	방송시간	기획의도 및 개요
음악/문화/ 정보제공 중 택일	프로그램명 기재	#시간 (주 #회)	기획의도 및 개요 기재
...			

## 2. 방송 프로그램 제작·수급계획

※ 공동체라디오방송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작하고 수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기술

### 가. 제작·수급 기본방향

### 나. 분야별 투자규모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음악	###	### (##.##)	### (##.##)	### (##.##)	### (##.##)
문화	###	### (##.##)	### (##.##)	### (##.##)	### (##.##)
정보제공	###	### (##.##)	### (##.##)	### (##.##)	### (##.##)

※ ( ) 안에는 전년대비 증가율 기재

### 다. 지역밀착 프로그램 제작계획

구분	프로그램명	기획의도 및 개요	제작계획
음악/문화/ 정보제공 중 택일	프로그램명 기재	기획의도 및 개요 기재	##년 상반기
...			

**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

※ 해당 지역에 공동체라디오가 신설되어야하는 필요성 및 당위성, 사회·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지역성 구현 및 지역사회 기여 계획**

※ 소출력 커뮤니티 매체로서 콘텐츠의 지역성 구현방안, 지역사회 기여계획, 지역기관·단체 등 지역 내 사회적 자원과의 네트워크 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

1. 조직도 및 인력구성 현황

가. 조직도(기구표)

나. 인력구성 현황

인력구성 및 인건비 현황(2021.2.28. 기준)

(단위: 명, 천원)

구분		임원	정규직	자원봉사자	기타
인원	정원	##(##)	##(##)	##(##)	##(##)
	현원	##(##)	##(##)	##(##)	##(##)
인건비	총액	###	###	###	###
	평균	###	###	###	###

※ ( ) 안에는 방송관련 인력을 기재

방송관련 부문별 인력구성(2021.2.28. 기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단위: 명)

구분	PD	방송기술	기타1	기타2
임원				
정규직				
자원봉사자				
기타				

※ 기타1, 2는 진행자 등 필요한 방송 관련 부문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추가 항목 신설 가능

## 2. 경영, 기술, 제작 등 각 분야별 인력 충원 및 조직 운영 계획

※ 분야별·연도별 인력 충원 계획, 자원봉사자 인력확보 방안 및 운영 계획, 연도별 조직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가. 분야별·연도별 인력 충원 계획

분야별 인력충원 기본 방향

인력 충원 계획

(단위: 명)

분야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임원					
정규직					
자원봉사자					
기타					
합계					

※ 각 분야별로 충원할 인력의 수를 연도별로 기재하되 ( )안에는 방송관련 인력을 기재

□ 방송관련 부문별 인력 충원 계획

(단위: 명)

구분	PD					방송기술					기타1					기타2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임원																				
정규직																				
자원봉사자																				
기타																				

※ 기타1, 2는 진행자 등 필요한 방송 관련 부문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추가 항목 신설 가능

나. 자원봉사자 인력 확보 방안 및 운영 계획

※ 자원봉사자 운용, 주민참여 제고 계획 등 공동체라디오 운영 관련 자원봉사 인력의 확보방안과 운영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기본방향

□ 연도별 인력 확보 방안 및 운영 계획

## 다. 연도별 조직 운영 계획

□ 조직 운영 기본 방향

□ 연도별 조직 운영 주요계획



### 3. 교육훈련 계획

※ 조직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기본방향과 연도별 주요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가. 교육훈련 기본방향

#### 나. 연도별 주요 교육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교육내용	교육방법	비용
2021년	#####	강의/워크숍 등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4.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방안

※ 공동체라디오 대표자의 전문성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경영 감시 시스템 등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가. 대표자 전문성 및 경영효율성 제고 방안

##### 나. 경영 투명성 확보 방안

기본 방향

연도별 주요 계획

## 1. 자금조달 및 운영 계획

※ 방송국 운영 재원과 관련한 자금조달 및 프로그램 제작, 시설투자, 경상운영비 등의 운영계획(2021~2025년)을 구체적으로 기술

## 2. 재무구조의 적정성

※ 아래 양식에 따라 재무구조 관련 현황을 작성하되, '18~'20년도 '재무구조', '수입·지출 현황' 등은 설립된 법인에 한정하여 작성

### 가. 재무구조('18~'20)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9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0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요약 대차대조표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요약 손익계산서	매출액			
	방송사업매출액			
	기타사업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인건비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재무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나. 추정 재무제표('21~'25)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2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3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4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5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요약 대차대조표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요약 손익계산서	매출액					
	방송사업매출액					
	기타사업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인건비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재무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다. 수입 현황 및 추정수입

※ 아래 양식에 따라 수입 현황 및 추정수입을 기재하되 '기부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방송광고 수익금', '협찬고지수익금'에 대해 구분 작성하고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구분하여 기술

□ 수입 현황('18~'20)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금액	전년대비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증감비율	금액
기부금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		%		%	
방송광고 수익금		%		%		%	
협찬고지수익금		%		%		%	
...		%		%		%	
총 계		%		%		%	

□ 추정수입('21~'25)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금액	전년대비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증감비율	금액
기부금		%		%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		%		%		%		%	
방송광고 수익금		%		%		%		%		%	
협찬고지수익금		%		%		%		%		%	
...		%		%		%		%		%	
총 계		%		%		%		%		%	

라. 지출현황 및 추정지출

□ 지출 현황('18~'20)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금액	전년비증감비율	금액	전년비증감비율	금액	전년비증감비율	금액
		%		%		%	
		%		%		%	
		%		%		%	
		%		%		%	
		%		%		%	
총 계		%		%		%	

□ 추정지출('21~'25)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금액	전년비증감비율	금액	전년비증감비율	금액	전년비증감비율	금액	전년비증감비율	금액	전년비증감비율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		%		%		%	

### 3. 방송시설 구축 및 운용계획

※ 안정적인 방송제작·송출을 위한 방송시설 설치·운영 계획과 시설 투자 계획, 유지보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가. 방송시설 구축 및 운용계획

#### 나.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계획('21~'25년)

(단위: 천원)

기간	방송시설명	세부내용	투자금액	비고

#### 다. 방송시설 유지보수 계획

#### 라. 방송사고 및 방송재난 대비

※ 방송 중단, 불안정 송출 등 방송사고에 대비하고, 자연재해 등 위급 상황에 안정적으로 방송을 송출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4. 난청 및 혼신 해소 계획

※ 방송구역 내 난청 및 혼신 발생 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5. 방송발전 기여 방안

가. 지역공동체 발전에 특화된 방송발전 기여 계획

나. 재난방송 실시계획

※ 방송구역 내 재난상황 발생 시, 이에 대한 재난방송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IV. 대표자·편성책임자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V. 법인의 정관·법인등기부등본**



## VI. 기타서류





## 1. 대차대조표(2018 ~ 2020년)

## 2. 손익계산서(2018 ~ 2020년)

### 3. 납세실적 증명서

- 납세사실증명(2018~2021.2월말)
- 납세증명서(발급일 현재)